

# 학부장학금지급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의 학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서울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사무관장) 본 대학교의 장학업무 중 모금 활동과 예산 편성은 기획처장이, 장학기금의 관리 및 지급은 사무처장이 각각 관장하고 장학금 운영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부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이 관장한다.
- 제4조 (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 2 장 학생지원위원회

- 제5조 (설치) 본 대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학생지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로 정한다.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 3 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제9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중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업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2.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4.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일정기간 근로로 봉사하는 학생
  5.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직계자녀
  6.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8. 장학금을 기탁한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가 의뢰한 학생
  9.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
- 제10조 (교내·외 장학금의 종류,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① 본 대학교 교내·외 장학금은 등록

금성 장학금과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종류와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은 <별표1>과 같다.

1. 등록금성 장학금 : 등록금 범위내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성적·가계곤란 등의 장학금을 의미한다.
  2. 생활비성 장학금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도 지급될 수 있는 장학금으로 근로성·활동성·포상성 등의 장학금을 의미하며 <별표1>에 「이중수혜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 규정과 장학 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신청시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 중에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인재개발처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13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해당학기에 복학한 학생
2. 해당학기에 재·편입학한 학생
3. 해당학기에 전부(과)한 학생(수석 및 우수장학금에 한함)
4. 해당학기에 징계가 해지된 학생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단, 1-2항의 경우 [별표1]세부사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일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장학생 선발시기) 장학생의 선발시기는 그 내용에 따라 직전학기 말 또는 매 학기 초에 공고하여 선발한다.

제15조 (장학생 선정 기준) ① 본 대학교의 장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혜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0/4.5이상인 학생으로 14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단, 8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취득)

② 기타 장학생 선정시 필요한 사항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선발절차 및 확정) 장학생의 선발절차 및 확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인재개발처장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고한다.
- ②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장학금 지급 시안에 따라 각 대학장 및 해당 부서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다.
- ③ 모든 장학금은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④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확정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

다.

제17조 (장학생 명부 관리) 학생지원팀은 장학금을 수혜한 장학생 명부를 관리한다.

제18조 (장학생 명단 통보)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장학생 선발이 확정되면 그 사실과 내역을 각 대학, 재무팀 그리고 수혜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 확정된 장학금 수혜 학생명부에 의하여 학비 감면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②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고 그 외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장학금 기탁자의 예외적 지급 요구 및 근로성 장학금, 활동성 장학금은 대출 상환 없이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받은 재학생이 초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 혹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성 장학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은 등록금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교외(외부)장학금
2. 국고지원장학금
3. 교내장학금

⑤ 장학금 지급 금액은 최소 2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지급결정 유효기간) 장학금 지급결정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0조의 신입생 장학금은 재학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수혜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점평균 미만인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21조 (이중 수혜 금지) 각종 장학금의 지급은 한 종류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학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하나를 적용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이중수혜 가능한 장학금의 경우(<별표1> 세부사항 참조)
2. 교내, 교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이 안될 경우(단, 장학금 기탁자가 예외적으로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삭제>
4. 장애학생 및 가계가 곤란한 학생(한국장학재단 가계곤란자 기준 적용)(단, 교내, 교외장학금을 합쳐 등록금 전액범위내로 지급한다.)

제22조 (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①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단, 국가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의 경우 각 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2. 체적 및 자퇴 학생
3. 휴학 학생
4. 허위로 장학금 신청한 학생
5. 기타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학생

② 전항 1, 4, 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항 3호의 경우 성적장학금(바름1, 바름2, 한샘, 총장, 학장, 수석, 우수 1)에 한하여 수혜 당시 금액만큼 복학 시 학비감면한다. 단, 휴학 후 1년 이내 복학할 경우에 적용한다.

- ④ 전항 2호의 경우 해당학기 성적을 취득한 경우 회수하지 않는다.
- ⑤ 그 외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 (장학금 수혜기간) 본 대학교 재학생의 장학금 수혜 기간은 8학기(등록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꿈나무장학금은 등록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2. 자매장학금은 해당 자매가 9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자일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
3. 교내인턴장학금(특별)은 9학기생도 수혜가 가능하다.
4. <삭제>
5. GKS정부초청장학금은 9학기생도 수혜가 가능하다.
6. SWU희망장학금 I · SWU희망장학금 II는 8학기(등록학기)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되 학생활동 장학금의 지급기준(전학기 성적 평점 2.0이상)은 1989학년도 2학기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3) (경과조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4)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 (5) (경과조치) 바뀐 장학금은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급되고 그 후 소멸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세칙은 폐기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①항 5호 개정 및 제24조 신설 <'95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①항, 제10조 ①항 및 제21조 개정 <'95 제14차 교무위원회>, 제10조 제1항 제8호 개정 <'96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제2호 개정 <'96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②항 <'97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①항 개정, 단, 제10조 ①항 1호, 2호, 3호 및 4호는 '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97 10차 교무위원회, 제17차 교무위원회>)
-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소급시행 한다.<'97 제3차 장학위원회>)
- (3) (경과조치) 구 장학금 지급 규정 제10조 ①항 1호, 2호 및 3호는 '96-'97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소멸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98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①항 개정 <'99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 <'99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①항 개정, 제10조 ①항 1,2,3호 개정 <'99 제14차 교무위원회>) (전면개정 <'99 제20차 교무위원회>)
- (2) (경과조치) 제10조 ②항 <별표1>의 한샘2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학교장추천전형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00 제21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0조 ①항, 제13조, 제20조, <별표1> 개정, <'01 제21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20조, 제24조 및 [별표 1] 개정 <'03 제4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1항, 제2항 [별표 1] 및 제24조 제1항 개정 <'04 제18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개정 <'04 제18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0조 제1항 2호, 제12조, 제17조 개정 <'05 제9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24조 제1항, 제26조 개정 <'05 제17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4조 제10호 삽입 <'05 제20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①항 2호 너목, 3호 커목 내지 허목 신설, ②항 <별표1>개정 <'05 제22차 교무위원회>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①항 3호 구목 내지 두목 신설, ②항 <별표1>개정 <'05 제22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0조, 제13조, 제2조 1호, 2

호, 제22조 3호, 4호, 5호, 제23조, <별표1> 개정 <2006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별표1> 개정 <2007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07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별표1>개정 <2007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 제15조, <별표1>개정 <2008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개정 <2008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 개정 <2008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제정 <2009 제19차 교무위원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개정 <2009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2조, 제17조 개정 <'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분리로 인한 변경사항 개정 및 제3장 삭제, <별표1-2>모녀장학금, <별표1-4>대학원장학금 삭제, <별표1-3>기구개편 및 명칭변경사항 개정, <별표1-3> 모녀, 우수2, 학업성취, 특별C, 특별D, 복수학위, 에코, 적성개발트랙 제정) <2009 제2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1>삭제 <2010 제9차 교무위원회>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개정 <2010 제9차 교무위원회>회)
- (3) (시행일)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개정 <2010 제9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10 제17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 슈먼 개정 <2010 제31차 교무위원회>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홍보바름이, 슈먼닷컴 개정 <2010 제31차 교무위원회>회)
-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 꿈나무, 한울, 외국인, [별표1-3] 꿈나무, 청운, 국가근로, 학생활동, 기숙사사생회임원, 홍보바름이, 슈먼닷컴, 예코, 특별(B) 개정, [별표1-3] 미래지성 폐지 <2010 제31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해외인턴십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외국어능력, Swell 특별 개정 <2011 제2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사회봉사, 수업보조(T/A), 해외봉사, 세계문화체험, 바름독서, 교직, 해외탐방, 적성개발트랙 개정 <2011 제6차 교무위원회>회)
-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 바름1, 바름2, 한샘, 슈먼, 한울, 외국인 개정 <2011 제6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Swell 특별 개정 <2011 제9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 꿈나무, [별표1-3] 꿈나무 개정 <2011 제15차 교무위원회>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중 우수 장학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중 슈먼애서(愛書)장학금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중 비름교육, 튜터, 홍보바름이, 슈먼닷컴 장학금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2 제1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2. 신입생 장학금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7조, 제21조제3호, [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개정 <2013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개정 <201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3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2. 신입생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개정 <2014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중 꿈나무장학금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별표1]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4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 재학생 장학금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개정, 제21조제3호 삭제 및 제4호 신설, 제22조제1항제3호 개

정,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4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제1호 개정 및 제4호 신설,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4 제2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제5호 신설, [별표1]2. 신입생 장학금 개정,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제정 <2015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별표1]2. 신입생 장학금 제정 및 개정,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제정 및 개정, <2015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4호 개정 <2015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별표1]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별표1]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5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별표1]3. 재학생 장학금 제정 및 개정 <2015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 삭제, 제19조②항 신설, 제10조 개정, [별표1] 2. 신입생장학금 바롬1장학금·바롬2장학금·한샘장학금·다움장학금·가온장학금 개정 <2016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③항 신설, [별표1]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6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7호 신설, [별표1] 2. 신입생장학금,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6 제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2. 신입생장학금 개정 <2017 제6차 교무위원회> <2017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7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7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제4호 삭제 <2018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제4항 및 동조제5항 신설, [별표1] 2. 신입생장학금 및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8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장학금 개정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2조제1항 개정,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9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9 제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개정 <2019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1항, [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0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0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9조, 동조 제1호, 제14조,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20조, 제22조 제3항, 제23조,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 개정, 동조 제6호 신설,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0 제1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개정,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0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2조,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 [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1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개정 <2022 제2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2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2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개정 <2022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중 교환학생 장학금, 파견학생장학금, 복수학위장학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2 제2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개정 <2023 제4차 교무위원회>)

(적용례) [별표 1]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및 3. 재학생 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 중 교환학생장학금, 파견학생장학금, 복수학위장학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3. 재학생 장학금-학생활동 개정 <2023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5조제1항,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개정 <2023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개정,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4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4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 신입생 장학금,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4 제1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제1항 개정, 제22조제4항, 제5항 신설, [별표1] 1. 신입생 장학금, 3. 재학생 장학금 개정 <2025 제4차 교무위원회>)

[별표 1] <개정 2022. 10. 19., 2022. 12. 28., 2023. 2. 22., 2023. 4. 26., 2024. 7. 10, 2024. 10. 30, 2025. 1. 21., 2025. 4. 30.>

장학금 수혜자격 및 수혜내용

1. 신입생 장학금(수시 1학기 모집)<삭제>

2. 신입생 장학금(수시 및 정시 모집)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바 롬 1	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바름인재서류전형, 바름인재면접전형) 모집단위별 수석합격자 중에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회의 추천을 받은 합격자로 전형별 1인 ②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수석합격자. 단,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비교내신 적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③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백분위점수 평균이 95% 이상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평균 상위 3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점수> 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 본교에서 정한 백분위 환산 기준(영어영역)을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를 의미함. 단 실기고사가 있는 예체능 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한 산출 기준을 적용함. ※ <삭제> ※ 예체능계열 중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실기고사 점수가 9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함	• 등록금 전액 • <삭제> • 도서구입비 100만원(매 학기) •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기숙사2, 4인실 우선 입사 및 관비 면제(4인실 기준) • <삭제>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함
바 롬 2	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바름인재서류전형, 바름인재면접전형) 모집단위별 수석합격자 중에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 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계열별(인문사회/자연) 상위 2% 이내인 자. 단,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비교내신 적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③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백분위점수 평균이 93% 이상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평균 상위 5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점수> 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 본교에서 정한 백분위 환산 기준(영어영역)을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를 의미함. 단 실기고사가 있는 예체능 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한 산출 기준을 적용함. ※ <삭제> ※ 예체능계열 중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실기고사 점수가 9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함	• 등록금 전액 • <삭제> (합숙프로그램은 1회로 제한) • 도서구입비 50만원(매 학기) •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삭제> • 기숙사 2, 4인실 우선입사 (입학 학기에 한함)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함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한샘	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바름인재서류전형, 바름인재면접전형) 모집단위별 수석 합격자 중에 학생부종합전형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수시모집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계열별(인문사회/자연) 상위 3% 이내인 자. 단,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비교내신 적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③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영역 백분위점수 평균이 90% 이상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평균 상위 10명 ※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점수> 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 본교에서 정한 백분위 환산 기준(영어영역)을 반영하여 산출한 점수를 의미함. 단 실기고사가 있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동일한 산출 기준을 적용함. ※ <삭제> ※ 예체능계열 중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실기고사 점수가 9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의 70%</li> <li>•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li> <li>• 기숙사2, 4인실 우선 입사(입학 학기에 한함)</li> </ul>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함
아름	실기(실기우수자전형) 수석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의 70%</li> <li>•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li> </ul>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4.5 이상인 경우 2년간 계속 지급함
다음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수석이거나 상위 10% 이내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학기 수업료의 50%</li> <li>•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li> <li>• 기숙사 2, 4인실 우선 입사(입학 학기에 한함. 성적 우수 순으로 입학처에서 추천한 자)</li> </ul>	-
한울	<삭제>		
한나	각 전형 단대별(체육/산업디자인학과제외)/자율전공 학부(계열통합)/예체능계열 상위 10%이내 합격생 중 기독교인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의 70%</li> </ul>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8/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 개강 이후, 증빙서류 지참 후 신청
꿈나무	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②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심한 장애: 수업료 전액</li> <li>• B.심하지 않은 장애: 수업료의50%</li> <li>• C.아동복지시설퇴소자: 수업료의 50%</li> </ul>	- 개강 이후, 증빙서류 지참 후 신청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외국인	순수 외국인전형에 합격한 순수 외국인 신입생 및 편입생	① . 입학전형우수자 : 수업료의 30% . 본교 한국어교육센터(1학기 이상) 수료생 및 TOPIK 3급 취득자 : 수업료의 50% . TOPIK 4급 및 5급 취득자 : 수업료의 70% . TOPIK 6급 취득자 : 수업료 전액  ② <삭제>	
월계수	<삭제>		
미술.디자인 I	본교 주최 미술.디자인 실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뒤 본교에 진학한 학생 중 조형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300만원(대상) • 100만원(금상)	.수상 후 3년 이내 입학시 첫 학기에 한해 지급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주관학과, 전공에 입학한 신입생
가온	수시 학생부종합(바롬인재서류전형, 바롬인재면접전형),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최초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상위 30%이내인 자 ※ 학생부교과전형(교과우수자)인 경우 인문사회 계열, 사범계열, 자연계열 에 해당됨.	• 일정액 • 교환학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기숙사 2, 4인실 우선 입사(입학 학기에 한함. 성적 우수 순으로 입학처에서 추천한 자)	

- ※ 신입생 중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중 유리한 하나를 적용한다.
- ※ 전체 신입생 장학금은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한다.(단, 8학기의 경우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취득)
- ※ <삭제>
- ※ 바롬1, 바롬2, 한샘, 아름, 다음장학금은 최초합격자에 한해 지급한다.
- ※ 장학생 동점자 발생할 경우 동점자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3. 재학생 장학금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총장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학년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총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학장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단과대학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학장장학생은 승계 되지 않음.
수석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수석인 학생	수업료 전액	.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미만인 경우 우수1장학금 지급 .수석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우수 1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차석이거나 상위 5%이내인 학생	수업료의 70%	.수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우수2장학금 지급 .우수1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우수 2	수혜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상위 10%이내인 학생	수업료의 40%	.수혜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함. .우수2 장학금은 승계되지 않음.
총장특별	학교 비전 실현 및 발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일정액	.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이중수혜 가능*
면학	수혜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일정액	.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학업향상	2개학기 연속 재학생 중 성적이 1.5이상 향상된 학생	일정액	
교내 인턴	.각 부서 및 학과에서 일정시간 인턴으로 봉사하는 학생 .장애학생 도우미로 봉사하는 학생	일정액	.일반과 특별로 구분함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이중수혜 가능*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신청가능
사회봉사	사회봉사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 활동에 참가하여 사회봉사 활동 기관으로부터 우수봉사자로 추천 받은 학생으로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학생활동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발전과 면학 분위기를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생	일정액	.수혜 직전학기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학생 .이중수혜 가능* .복학생 신청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신청 가능
체육특기자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입학하여 본 대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한 학생	수업료의 50%	.1학년 2학기부터 매학기 지급 .금학년내 전국대회 3위권내 입상 실적이 없을 경우 차기 1년간 장학금 지급을 중지함
교직원 직계 자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직계 자녀	수업료 전액	.8학기 수료 후 편입학한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8학기 등록 후 학점미달, 부전공·복수전공 등을 이수하기 위하여 9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지급하지 않음. .정년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도 졸업 시까지 지급함 .복학생 신청 가능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보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 자녀	등록금 전액	.보훈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총 8개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
바름교육	바름인성교육,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를 이수한 학생 중 바름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단, 2019학번 이전까지는 바름교육 I·II·Ⅲ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바름인성교육부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의 35%	.복학생 신청가능
슈가 (SWU家)	할머니(외조모 또는 친조모)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수업료의 50%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모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수업료의 35%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 .복학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자매	본교에 동시 재학중인 자매학생에게 총 2회 지급 (단, 자매3명 이상이 본교에 재학한 경우 총 4회까지 지급 가능)	수업료의 35%	.대학원 재학생은 포함되지 않음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특별(A)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수업료의 전액	.재학중에 합격하였을 경우 등록금을 전액 면제 .변리사,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도 해당됨 .복학생 신청가능
특별(B)	①각종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참석, 입상하여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 ②우수학술논문 게재 또는 전시회에 작품을 발표한 자	수업료의 35%	.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팀 수상 또는 공동논문 게재(공동작품 전시)의 경우, 수업료가 높은 단과대 수업료의 35%를 1/n로 지급함 .이중수혜 가능* .복학생 신청가능
특별(C)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시험(7급),AICPA 외 이에 준하는 기타 자격증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70%	.복학생 신청가능
특별(D)	외무, 행정, 사법고시나 이에 준하는 시험에 1차 합격하여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공인회계사, 기술고시, 지방고시, 변리사)	수업료의 50%	.복학생 신청가능
교환학생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교환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복학생 신청가능
이웃사랑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일정액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백일장	고교재학시 본교 주최 여고 백일장에서 수상을 한 뒤 본교에 진학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료 전액(장원)</li> <li>•수업료 65%(차상)</li> <li>•수업료 35%(차하)</li> </ul>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2개 학기 지급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0% 이내인 학생 .수석장학생 산출 단위에 의함
홍보바름이	<삭제>	<삭제>	<삭제>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성적(1급)	타학생들과 석차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8학기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면학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내 선발	일정액	
수업보조 (T/A)	일반 및 예체능 분야 수업을 보조하여 강의의 진행을 돕는 학생 중 교무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봉사	해외봉사프로그램 공모에 선발된 학생으로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튜터	튜터로 활동하는 2,3,4학년 학생 중 교수·학습센터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생 신청가능
기숙사 사생회임원	기숙사사생회임원으로 활동하는 학생	기숙사관비 전액	.식비제외 .이중수혜 가능*
파견학생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파견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복학생 신청가능
세계문화체험	세계문화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 가능
학.군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정원외로 입학한 군위탁생	수업료의 30%	
교양독서	교양독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중 기초교육원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인턴십	해외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꿈나무	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②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소녀가장	• A.심한 장애: 수업료 전액 • B.심하지 않은 장애: 수업료의 50% • C.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수업료의 50%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평균평점 1.6이상인 학생 장학금 지급
외국어능력	① 영어프레젠테이션 성적우수학생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일정액	.이중수혜 가능*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청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입은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로 확인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 ④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비가 등록금액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전액	<삭제>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직전학기 평점평균3.0이상학생
교직	교직이수과목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직 실습생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으로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국가근로	산업체 및 (비)전공관련 시설에서 일정시간 근로하는 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일정액(국고 및 교비)	.이중수혜 가능* .복학생 신청가능 세부규정은 국가근로장학금 시행세칙을 따른다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특성화사업단	전공특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특성화사업단장이 추천한자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복수학위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복수 학위 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 80%	· 복학생 신청가능
एको	एको캠퍼스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 실천단 학생 중 에코캠퍼스추진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 복학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가능
해외교직	교직과정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교양대학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가능* · 복학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슈먼에서 (愛書)	도서관 우수이용자 중 도서관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가능* ·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SWCD	SWCD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학생 중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 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교육기행	교육기행 참가자 중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 복학생 및 재·편입한 학생 신청 가능
슈리포터	<삭제>	<삭제>	<삭제>
GKS정부 초청	GKS정부 초청장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입학금 면제 · 수업료 전액 (9학기이후부터 적용)	· 복학생 학생 신청 가능
미술.디자인 II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주관 학과 및 전공 재학생 중 조형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일정액	· 복학생 신청 가능 · 미술.디자인 실기대회 수익금으로 지급
귀순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등록금 전액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를 따름 ·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100 이상인 학생 · 총 8학기 지급(수업연한 포함(타대학지원 포함))
인문100년 장학생 학업장려	인문100년장학생으로 선발(2015년 이후 선발)된 학생	일정액	·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생 성적충족자 · 복학생 가능 · 이증수혜 가능*
자기추천	역량강화활동을 통하여 자기 개발에탁월한 재학생 중 학생·인재개발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 재학중 1회 수혜 가능 · 복학생 신청가능
SWU 지원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복학 및 신·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SWU 학업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부서장(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복학 및 신·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 이증수혜 가능*
swupr	본교 학생홍보단체로 활동하는 학생 중 기획처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이증수혜 가능* · 복학 및 재·편입학한 학생 신청가능

장학금종류	수혜자격	수혜내용	세부사항
외국인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편입생 포함) 순수 외국인 재학생	① <삭제> ② . 직전학기 평점평균 4.3/4.5이상 :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 평점평균 4.0/4.5이상 : 수업료의 5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4.5이상 : 수업료의 40%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이상 : 수업료의 30%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 수업료의 25%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 : 수업료의 20% . TOPIK 4급 미소지 시, 수업료의 20%를 초과하여 수혜 불가함 . 입학 후 1년 이내 신규 TOPIK 4급 이상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함) 학업장려비 30만원 지원	.재학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인 경우 4년간 계속 지급한다.(평점평균에 따라 차등지급) .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단, 1학년은 TOPIK 성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장학금 수혜 가능
글로벌 우수	외국인 유학생 중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학생 중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성적산출 단위는 별도로 정함
마일리지	재학 중 교내·외 역량강화활동에 참여하여 일정 마일리지를 취득한 학생	. 일정 마일리지 환산액 (200,000원 이상)	.복학 및 재·편입한 학생 수혜 가능 .이중수혜 가능*
SWU 희망장학금 I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SWU 희망장학금 II	부서(사업단) 특성에 따라 부서장 (사업단장)이 추천한 학생	일정액	. 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 신청 가능 .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 . 이중수혜 가능*

※ 세부사항의「이중수혜 가능\*」: 등록금 전액범위를 초과해도 지급함.

※ 성적장학금(총장·학장·수석·우수1·우수2)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 가능함.

1. 수혜내용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국가재난사항 등) 변경 가능함.
2. 동석차 발생 시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을 적용하며 적용 후에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지급함.
3. 장학 동석차 처리기준은 학생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 가능함.

※ 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기준 없음